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2 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서영교・김용민・윤준병

이해식 • 한정애 • 임오경

안태준 • 박지원 • 서영석

안호영 의원 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, 독거노인 증가 등 가족구성의 변화로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간병비용 또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고 있음.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간병 도우미료는 약 27.5% 상승하였음.

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'간병'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들은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의 사적 간병비용을 부담하거나 환자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에 '간병'을 포함하고,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 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8. 간병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(간병에 관한 특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(이하 이 조에서 "간병요양급여"라 한다)로 인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
  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  - 2.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5조제4항 중 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"을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 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1조(요양급여) ① 가입자와 피	제41조(요양급여) ①		
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			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			
급여를 실시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<u>8. 간병</u>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제44조의2(간병에 관한 특례) ①		
	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제1항		
	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		
	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(이		
	하 이 조에서 "간병요양급여"		
	라 한다)로 인하여 본인일부부		
	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		
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
	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		
	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		
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		
	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		
	에 해당하는 사람		
	2.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		
	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		
	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		

제115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

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략)

#### 사람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15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②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

     해당하는 자는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가 한 자
 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면제받도록 한자
  - ⑤ (현행과 같음)